

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

전부개정 2024. 4. 23. 규정 제908호

1. 개정이유

- 산학협력단 수익 증대를 위한 간접비 징수율 상향 조정
- 현행 규칙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2. 주요내용

- 당초 지원기관, 연구비, 간접연구경비 및 연구책임자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,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시(안 제3조)
- 당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과제 신청, 체결 및 연구계획의 변경 등 내용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5조~제7조)
- 연구비 감사의 구분 및 계획 내용을 삭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내용 신설(안 제12조)
-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의 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 명시(안 제14조)
- 현재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수익 및 운영비(운영인력)를 고려하여, 연구비에 간접비를 반드시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18조)

당초	연구책임자는 현물을 제외한 연구비 총액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연구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기업체를 제외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를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u>
변경	<u>연구비에는 간접비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한다.</u>

- 간접비 징수율의 상향 조정 및 세분화 명시(안 제19조)

당초	연구책임자는 현물을 제외한 연구비 <u>총액의 10%</u>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연구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기업체를 제외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를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u>
변경	<u>정부지원 연구과제(지원기관에서 징수율을 정한 경우) : 지원기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상률(액)을 징수하되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매년 고시된 간접비 징수율을 적용</u>
	<u>정부지원 연구과제(지원기관에서 징수율이 없는 경우) : 연구비 총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<u>최소 100분의 15</u>를 징수</u>
	<u>민간지원 연구과제 :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관계없이 연구비 총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<u>최소 100분의 15</u>를 징수</u>

- 회계업무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내용 신설(안 제23조)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보안조치 내용 신설(안 제24조)
-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